

제318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20.
전문위원 신정경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개요

- 가. 의안번호: 제582호
- 나. 제출자: 권영애 의원 등 13인
- 다. 제출일자: 2026. 3. 23.
- 라. 회부일자: 2026. 4. 7.

2. 제안이유 :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의 개정사항 반영

- 1)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
- 2) 자격증 가산점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
- 3)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 (안 제6조)
- 나.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련 규정에 맞게 18세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9조)
- 다.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하고, 가산점 비율을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
- 라. 법령 인용 방식 및 띄어쓰기 등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표기를 통일함 (안 제4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20조, 제23조, 제34조, 제38조, 제4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공무원 임용시행령」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6. 3. 27.~2026. 4. 2.(의견없음)

II. 검토의견

1.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핵심

가. 핵심 문제점: 불명확한 재량권

- 재량권 남용 우려: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,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 비율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 높음.
- 예측 가능성 저해: 규칙 본문에서 정한 자격증 외에 어떤 자격증이 추가될지, 가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여 응시자가 미리 준비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.

나. 개선권고 사항

- 특전 문구 삭제: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상위법(지방공무원 임용령)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.
- 공고·고시 의무화: 재량을 유지하더라도, 가산 대상 자격증과 비율을 사전에 ‘고시’ 또는 ‘공고’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하여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도록 규정.

2. 주요 내용

가. 응시연령 기준의 단일화(안 제9조)

변경 전	변경 후
<p>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.</p> <p>1. 7급 이상 : 20세 이상 2. 8급 이하 : 18세 이상</p>	<p>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삭제 2. 삭제</p>

- 내용: 기존 7급 이상(20세 이상), 8급 이하(18세 이상)로 구분되던 응시연령을 연령 구분 없이 **18세 이상**으로 통일함.
- 검토의견: 상위 법령인 「공무원 임용 시험령」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하위 규칙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임.

나. 전문경력관 채용 가산점 투명성 강화(안 제15조)

변경 전	변경 후
<p>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(연구사·지도사를 포함한다) 공무원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</p>	<p>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(연구사·지도사를 포함한다) 공무원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</p>

- 내용: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범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.
- 검토의견: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.

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서식 통일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4조제2항 제11조 제23조제1항	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~의 규정에 따른	제1항에도 불구하고 ~에 따른
제6조제1항 제11조 제16조제3항 제38조제1항	~하고자 하는	~하려는
제10조제2항,3항 제11조 제14조	기타 6월 당해	그 밖에 6개월 해당
제2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3항	~일로부터 ~ 의거	~부터 ~ 따라

5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발맞추고,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돋보임.
- 특히, 전문경력관 채용 시 가산점 기준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공개 하도록 한 점은 의회 인사의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.
- 또한 18세로 응시연령을 낮춘 것은 청년 세대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.
- 따라서 본 규칙안은 관계 법령과의 충돌이 없으며,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1 관계 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27조(신규임용)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(이하 "경력경쟁임용시험"이라 한다)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1 ~ 13. (생략)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제55조의3(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) ① 삭제

②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,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,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, **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·방법·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**

□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

제3조(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임용방법)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(이하 "경력경쟁임용시험등"이라 한다)으로 임용한다.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·제7호·제9호·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□ 「공무원 임용 시험령」

제16조(응시연령)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교정·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5.>

② (생략)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
 2.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
 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·규칙
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·지방공단 내부규정
-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현황**

- 기초 자치구와 의회는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하고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은 신규 임용 시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,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·방법·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

□ **문제점**

- 대부분의 자치구와 지방의회는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임용 특전에 있어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존재
 -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만으로는 해당 자격증이 규칙 본문에서 정한 자격증의 범위 내인지, 그 밖의 자격증도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
 - 특히,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에 관한 정보가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채용비리의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음

[표 4] 지방(의회)공무원 인사규칙 현황

(○ : 규정 있음, X : 규정 없음)

구 분		관련 규정	임용권자가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단서 유무
서울	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	○
	의회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	○